

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설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8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9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이유

통장 고유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신비용 지원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통장 고유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한 통신비용 지원 명시(안 별표)
- 나. 용어 정비 : 위촉 → 임명(안 별표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고유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자 통신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, 통장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별표에서 통장 업무수행 통신비용 지원을 분기별로 지원 하는 것을 규정함

- 타 지자체 통·반장 대상 통신비 지원 대상
 - 서울시 1개구(서대문구) : 반장 대상 年 50,000원 지급
 - 충남 아산시 : 2018년부터 통장 대상 月 15,000원 지급
 - 경북 경주시 : 2025년 1월부터 통장(이장) 대상 月 3만원

※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투넘버 서비스¹⁾ 활용 예정

-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, 자율방범대 등 유사한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, 실질적인 수요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1) 통신사의 투넘버 서비스는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 서비스로, 업무와 개인용 번호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용(월 4,000원 이하)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5149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